제333회충청남도의회(정례회)

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
일 시 2021년11월15일(월) 17시

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

의사일정

1.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

심사된 안건

1.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(위원회안) … 1면

(17시03분 개의)

○**위원장 안장헌** 이어서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.

1.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(위원회안)

○**위원장 안장헌**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.

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 당하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된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상정하 였습니다.

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

다.

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 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「대답없음」)

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기획경제 위원회에서도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충분히 기다렸다고 사료됩니다.

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접 자료제출 현황을 퍼센티지까지 확인한 결과 70%, 71%, 83%,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

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 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.

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과에 이의 있 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있음)

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.

2 ([제333회-기	회겨제	제2차
_ \			

부록	1.	기획경	경제위원회	행정/	나무감사	요구
		자료	미제출에	대한	과태료	부과
		요구:	의 건			

(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)

○출석위원(6인)

안장헌 조승만 방한일 오인철 이공휘 이선영

○출석전문위원

수석전문위원 윤진섭